15세기 품계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김정일선집》 제2권 중보판 35폐지)

품계는 봉건국가를 위하여 복무하는 관 료들에게 주는 벼슬등급이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 력사에서 봉건적중앙집권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던 15세기에는 계급신분관계가 더욱 째여져 지배계급내부에서도 계층적인 관료등급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었다.

15세기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봉 건적중앙집권력을 더욱 강화할 목적밑에 이 전시기의 통치기구를 재편성하는것과 함 께 그에 맞는 관료들의 벼슬등급제도를 새 롭게 재정비함으로써 저들의 특권적지위 를 보장하였다.

15세기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은 판직을 우선시하던 고려시기와는 달리 품계를 기 본으로 하여 관료들의 특권적지위를 표시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새 왕조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한 《개국공신》들을 기본으로 하여 관료들의 특권적지위를 보 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도 특별히 강조된 것은 품계였다.

실례로 중앙행정관청인 6조의 정3품 상계인 참의, 승정원의 정3품 상계인 도승지, 좌,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사간원의 정3품 상계인 대사간, 경연의 정3품 상계인 참찬관, 홍문관의 정3품 상계인 부제학, 성균관의 정3품 상계인 대사성, 춘추관의 정3품 상계인 수찬관 등을 비롯하여 봉건국가의 관료들중에서 정3품 상계이면 관직에 관계없이 모두 1관료군에 포함되였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새 왕조를 세우는데 《공헌》한자들을 《공 신》으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다른 관료들 과 달리 높은 품계를 줌으로써 그들의 특 권적지위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초기에 고려시기와는 달리 품계를 중시하게 된것은 조선봉건왕조의 통 치배들이 왕권탈취에 기여한 개국공신들 을 기본으로 계층적인 품계제도를 새롭게 형성하여 새 왕조에 맞는 특권관료군을 편 성하는것이 저들의 왕권강화에 편리하다 고 보았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품계를 위주로 관료들의 특 권적지위를 보장하고 여기에 저들의 측근 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반대파세력의 팽창 을 억제시키는 한편 국왕의 전제권을 강화 하여 보다 째여진 중앙집권적봉건통치체 제를 확립하자는데 있었기때문이였다.

이리하여 조선봉건왕조초기에 개국공신 들을 위주로 하는 품계제도가 재정비되였 으며 관료들의 특권적지위는 관직이 아니 라 품계를 기본으로 하는 특권관료군이 형 성되게 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품계를 기본으로 특권판료군을 형성하는것과 함께 그들의 특권적지위를 영구화하기 위하여 고려시기에 비해 품계의 종류를 3배로 증가시키고 해당 종류에 맞는 품계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이리하여 왕조초기부터 판료들에게는 신분적차이에 따라 해당 품계가 차례지게 되였다.

실례로 정직계에는 특권신분충들이, 종 친과 의빈계에는 왕족출신들이, 토관계에 는 지방토호출신들이, 잡직계에는 기술관 들과 장공인들이 포함되였으며 매 품계의 종류에 따라 동반과 서반으로 나누어져 같 은 품계에서도 서로 특권적지위는 달라졌 다. 여기서도 중요시된것이 관직이 아니라 품계였다.

그것은 15세기 특권관료군편성에서 집 중적으로 나타났다.

15세기 품계가 정3품 상계를 가진자들은 관직에 관계없이 당상관(1관료군)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고려시기에는 품계에 관계없이 관직의 높이에 따라 그들의 특권적지위를 나타내였다.

고려시기 상서도성에는 재상급에 해당 되는 종2품이상인 상서령(종1품)과 좌, 우 복야(정2품), 지성사(종2품) 등이 있었는 데 여기서 장관인 상서령만이 재상급에 포 함되였고 나머지 성원들은 품계가 높았으 나 재상급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구체적으 로 보면 상서도성의 실지 장관직이라고 말 할수 있는 정2품인 좌, 우복야는 당시 중 서문하성의 차관인 중서시랑평장사, 문하 시랑평장사와 품계는 같았지만 관직으로 보 아 재상급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뿐만아니라 자기보다 품계가 한 등급이 낮은 중추 원의 종2품 관직인 중추원사, 동지원사의 관직을 차지하고있던자들보다도 낮은 차 별대우를 받았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이 고려시기처럼 관직이 아니라 품계를 기본으로 관료들의 특권적지위와 권한을 주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15세기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비록 관료들의 특권적지위를 품계를 통하여 담보하였지만 여전히 관직도 무시할수가 없었다.

그것은 품계는 관료들의 특권적지위를, 관직은 그 권한의 측면을 나타내였기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품계와 관직은 다같이 봉건사 회에서 지배계급들에게만 국한되여있는것으 로 하여 매우 밀접한 련관속에 있다고 볼수 있다.

15세기 품계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자면

무엇보다먼저 품계와 신분과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것은 품계가 관리들의 신분적특성에 맞 게 구분되여있었기때문이다.

말하자면 정직을 받는 관리는 정직계를 받으며 토관직을 받는 관리는 토관직계를 받으며 잡직을 받는자는 잡직계를 받게 되 여있었다. 그것은 품계가 신분과 밀접히 련 관되여있던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정직 계는 주로 량반신분층이, 토관직계는 토관 신분층이, 잡직계는 중인출신과 일부 천민 출신의 기술관, 장공인층이 받게 되였다.

품계는 신분구별 및 차별을 벼슬제도상 에서 반영하고있었던것이다.

한편 매 벼슬자리에는 그에 해당한 품계가 제정되여있었다. 가령 조선봉건왕조시기 의정부인 경우 령의정의 품계는 정1품, 찬성의 품계는 종2품 등으로 규정되여있었다.

물론 세종통치시기에 행수직제*가 적용 되여 벼슬자리와 품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원칙적인것은 아니 였다.

> * 행수직은 품계와 관직이 서로 일정한 련관을 가지고있는것으로부터 봉건왕조가 품계가 높고 관직이 낮으면 〈행직〉이라 고 하고 반대로 품계가 낮고 관직이 높으 면 〈수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합쳐 행 수직이라고 하였다. 행수직제는 1442년 (세종4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였다. 《새종 실록》 권97 4년 7월 신사

그것은 품계가 관리들의 일반적벼슬등급을 반영한것으로서 1품의 품계를 받은자는 원칙적으로 1품에 해당한 임의의 벼슬자리에 임명될수 있는 자격을 국가로부터 공식 적으로 인정받고있었던것과 관련된다.

15세기 품계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자면 다음으로 품계와 관직과의 호상관계를 정 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봉건국가들에서 관료들의 특

권적지위와 권한은 품계와 관직으로 나타 내였다. 품계와 관직은 서로 뗼래야 뗼수 없는 관계이지만 여기서도 무엇을 중시하 였는가에 따라 관료들의 특권적지위가 달 라졌다.

15세기 품계는 관직과의 일정한 련관속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품계의 상대적인 독자성은 품계의 대상 자는 많고 벼슬자리는 수적으로 제한되여 있는데 그 원인을 두고있다. 다시말하여 관 리들은 처음으로 벼슬길에 들어서는 경우, 품계가 올라가는 경우, 벼슬에서 물러나는 경우에 구체적인 벼슬자리는 없어도 품계 만은 가지고있었다. 따라서 품계는 구체적 인 정액이 있을수 없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관리들이 처음 으로 벼슬길에 들어서는 전형적인 경로는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을 받는것이였다.

문과인 경우 과거급제자가운데서 갑과(1등-3등)급제자는 실직에 직접 임명되지만 을과(4등-7등), 병과(8등-23등)급제자는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 등의 3관에 림시 벼슬인 권지로 배치되였다가 일정한 년한 이 지나서야 실직에 임명될수 있었다.*

- *《태종실록》 권20 10년 10월 임술 이 경우에 급제자들은 관직에는 임명되 지 못해도 품계는 가지고있었다.*
 - *《경국대전》 권3 례전 제과조

원래 과거급제자들을 문과인 경우 승문 원, 성균관, 교서관에, 무과인 경우 훈련원, 사복시, 군기감 등에 권지로 견습배치하는 것은 세종통치년간에 제도화된것이였다.

다음의 자료들은 그것을 잘 실증해주고 있다.

《리조에서 제의하기를 〈옛 관례에는 새 과거시험에 합격한자로서 이전벼슬이 7품이하일 때에는 모두 성균관의 권지학유나 권지정자로 나누어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 과거시험에 합격한자들가운

데 이전 벼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대등한 품계에 임명한 결과 먼저 과거에 합격한자와 후에 과거에 합격한자와의구분이 없어지고말았습니다. 이제부터는이전벼슬이 7품이하일 경우에는 전례에 따라 성균관, 교서관, 승문원의 권지로 낮추어서 임명하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국왕이 그 의견을 따랐다.》*

《세종실록》 권20 5년 4월 신미일 《례조에서 제의하기를 〈서운판과 전 의감 두 판청의 권지는 각각 자기 부문의 과거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을 배치할것 이며 아직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이미 배 치된 사람들은 모두 취재시험을 보여서 임 명하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국왕이 그 의 견을 따랐다.》

*《세종실록》권27 7년 1월 을미일 우의 자료들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림 시직으로서의 권지는 관상감, 사역원, 전 의감 등의 기술관청에도 있었다.

봉건관리들은 비록 벼슬에서 물러나도 벼슬은 없지만 품계만을 가지고있던 전직자들이였다.

그들은 한때 벼슬에 임명되였다가 거 관, 사임 등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벼슬을 그만둔자들로서 관직에서는 물러났어도 품계만은 그대로 가지고있었으며 기회를 보아 다시 벼슬에 임명될수도 있는자들 이였다.

조선봉건왕조실록자료에 나타나는 품관 이 그 구체적인 실례로 된다.

품관은 품계를 가진 관리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도 쓰이였으나 어떤 경우에는 지 방에 근거를 둔 전직자들을 의미하는 개 념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향곡품관, 전함품관, 한량품관 등여러가지 표현으로 쓰이고있었는데 중앙에서 벼슬을 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가 품계만을 가지고있는 대상을 가리키고있었다.

《문종실록》 권12 2년 3월 정유조는 그에 대하여 자세히 말해주고있다.

《옛 제도에는 3품이하의 벼슬을 지내다가 지방에 거주하는자들을 모두 시위패에 속하게 하여 돌림으로 숙위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기술관전직자들 이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량반들과는 달리 벼슬에서 일단 물러나는 경우에도 관청에 계속 출근하게 되여있었기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실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리조에서 제의하기를 〈취재시험을 보이고있는 관청들에서는 대체로 맡은 직무가 없거나 벼슬을 뜬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관청에 다니게 하여 자기 전문을 버리지 않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도화서에서만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벼슬을 뜨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모두시골로 내려보내는것이 다른 관청과 규례를 달리하고있습니다. 나이가 늙었거나 재주가 없는 사람을 내놓고는 현재 본원에 다니고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해 세말에 취재시험을 보여가지고 실직에도 임명함으로써 자기 전문을 버리지 않게 할것입니다.〉하니 왕이 그 의견을 따랐다.》*

《세종실록》 권61 15년 8월 기묘일 《서운관, 전의감, 사역원 같은데서 해 당한 일을 배우는 사람들은 설사 직무없 는 관리라도 다 본관청에 출근하는 규례 가 있다.》

* 《세종실록》 권51 13년 3월 병자일

기술관청의 전직자들로 하여금 벼슬을 그만둔 다음에도 계속 관청에 출근하도록 한것은 그들이 일정한 기술의 소유자로서 벼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쓸모가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러므로 기술관청에는 현직자들과 함께 견습직인 권지, 학생인 생도와 함께 전함(전직)이 언제나 있게 되였다.

《세종실록》 권42 10년 12월 정유조에 의하면 《리조에서 제의하기를 〈사역원 한학에는 이전에 권지벼슬을 지낸 생도가 모두 130명으로서 체아벼슬자리가 7자리이고 별학은 13명으로서 체아직이 5자리이며 몽고학에는 전함, 권지, 생도가 모두 18명으로서 체아벼슬자리가 두자리이고 왜학에는 전함, 생도가 모두 27명으로서 체아직이 한자리입니다〉.》라고 하였다.

봉건사회에서 품계만을 가지고있던자들 속에는 전직자들과 함께 벼슬에서 물러난 퇴직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나이관계로 벼슬에서 완전히 물 러난 상태였으므로 다시 벼슬에 오를수는 없었으나 품계만은 그대로 가지고있었다.

15세기 품계는 관료신분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으로 되여있었으며 관료특 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 되여있었다.

15세기 품계는 조선봉건왕조시기 관료 제도의 일면을 보여주고있으며 동시에 그 것이 통치배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한 반 동적인 통치제도의 산물이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